

논단

도서관과 개인정보



김기성*

1. 미국 도서관은 감시받고 있다.

지난 2005년 6월 21일 미국도서관협회 주관 전미도서관대회 개최를 앞두고 매우 주목할 만한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2001년 10월 이후 회원 도서관에서 정부에 의해 609건의 공식, 비공식적 도서대출 기록제출 요구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라덴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이거나 호의적인 도서를 대출한 사람들의 정보를 요구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9.11 테러 이후 새롭게 추가된 애국법(Patriot Act) 제215조에 의한 것으로 정부기관은 테러방지 목적으로 도서관의 누가 어떤 책을 대출했는지, 서점에서 누가 무슨 책을 구입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료 제출과 관련된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 감시라는 반발 여론에 따라 지난 6월 15일 미 하원에서는 정부가 테러방지기금으로 도서관 자료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38대 반대 137로 가결되었으나, 7월 22일 미 상원은 오히려 문제 조항의 적용을 10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찬성 257 대 반대 171로 가결하였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현대 도서관 서비스 발전의 근간이 되었으나 그 역기능 또한 그림자처럼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 전산화가 시도된 이래 시스템 구축과 안정화에 전력해오는 과정에서 사실상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거나 무시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발전된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들은 갖가지 정보 환경을 통한 경험 속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식을 키워,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는 도서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편리한

* 서원대학교 학술정보원 사서, kmsks0@cb21.net

이용을 위해 개발된 개인화 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수집과 저장, 이용, 도서관에 도입된 각종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하는 협력업체, 일반 열람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CCTV나 열람실 공간부족에 따른 민원의 해소를 위해 설치된 무인좌석관리기 같은 보안기기에 의한 노출 등 많은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침해가 발생되고 있다.

2. 도서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도서관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요소는 주로 개인화된 웹서비스, 도서대출 서비스, 근무자 임의접근, 협력업체 위탁관리, 보안기기 운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다.

많은 도서관에서 IT 발전에 힘입어 대출기록 조회, 예약, 참고질의, 각종 서비스 신청 및 조회 같은 웹 기반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웹상에서 오고가는 많은 개인정보들은 컴퓨터 침해기술에 의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되고, 이용되는지 명확한 안내를 찾아보기 힘들다. 서두에 소개한 미국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2003년 8월 「ㄱ」 공공도서관 공익근무요원이 도서관회원 2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사이버머니를 만든 사건, 2005년 5월 「ㄴ」 대학 도서관 공익근무요원이 직원의 ID를 이용하여 알아낸 제3자 ID를 도용하여 도서를 대출한 사건을 비롯하여 지난 7월에는 「ㄷ」 대학 도서관이 학내 타부서로부터 특정인의 대출기록을 제공해달라는 업무 협조 요청을 받는 등 도서대출 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은 도서관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많은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갖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지원을 이유로 이들 협력업체의 도서관 시스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보안절차를 축소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시스템 무단접근과 위탁된 개인정보 등의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에 관한 문구를 찾아볼 수 없는 유지보수 계약과 맞물려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길거리 봉어빵 봉지로 사용되었던 유명 백화점의 고객정보 리스트처럼 도서관에 보관중인 개인정보들도 언제 길거리로 나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인정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CCTV나 무인좌석발급기 같은 보안기기는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는 또 다른 시야를 제공한다. CCTV는 열람실내 도난사고와 안전을 위하여 많은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줌과 회전기능을 갖춘 강력한 카메라는 몰래카메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갑분실을 막으려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영화를 찍게 하였다.

무인좌석발급기는 열람실 부족에 따른 좌석독점을 막겠다는 취지로 많은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문 인식을 통한 본인 인증이 제공하는 좌석독점 민원의 해소는 도서관에게 매우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필자가 근무하는 도서관에서도 지문인식에 의해 본인 인증을 하는 무인좌석발급기를 운영하던 중 인권침해를 항의하는 1인 시위와 온라인 게시판 시위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제기 등의 내홍을 겪다가 비밀번호 인증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열람실을 사용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거나 지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CCTV에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많은 이용자들은 감내하거나 호응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노출

되고, 생체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도서관 또한 이런 보안기기 도입에 있어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매우 인색하였으며, 다만, 최근 몇몇 대학도서관에서 열람실 CCTV 도입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 논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도 RFID나, 스마트카드가 적용된 학생증,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축 등 도서관과 관련되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3. 개인정보! 그게 뭔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정보보호의 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는 그 표현양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를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집중하고 있어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보장하기 위한 프라이버시권으로 보고 개인정보의 성격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보주체가 자기 자신

의 개인정보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 인격적 재산적 보호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서점에서 책을 사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행위 그 자체로는 개인의 비밀이라 할 수 없지만 일정 기간의 구매 내역이나 대출내역을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그 사람의 독서 성향이나 기호, 인격성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요소 그 자체로서 중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주소 등과 같이 그 자체로서는 중립적이거나 공개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해 개인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함부로 수집, 처리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우리 도서관은 믿을 수 있을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미 IT 사회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쇼핑몰, 인터넷뱅킹, 전자정부 등 하루에도 몇 번씩 로그인을 통해 IT 세상을 넘나들면서 IT 사회를 즐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개인정보이며,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엇을 말하는지, 누가 내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피해를 입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미국도서관협회(ALA)는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프라이버시 정책은 도서관 사용자들의 개인식별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를 보호하는 도서관의 약속을 전달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왜 그 정보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필요하고, 사용자가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개인식별정보의 유지와 전체를 관리하는 정책과 절차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도서관종별 정책 모델의 제시와 모범도서

관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ㄹ’ 공공도서관에서 발생된 이용자의 인권침해 민원은 우리 도서관에 불어 달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라는 시대의 권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민원을 시발점으로 하여 ‘ㄹ’ 공공도서관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21개 공공도서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실시되었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를 계기로 관련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고 각 급 공공도서관에서도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사서연수 교육과정에 개인정보 보호교육 과목 신설과 도서관 관련 법 제·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6월 1일 열린우리당 이미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8조(이용자 개인정보보호)는 이용자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 웹서비스와 대출 서비스에서 만나는 개인정보 노출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화면보호기를 사용하는 노력, 도서대출기록과 이용자정보관리 접근을 위한 보안 인증 마련, CCTV 녹화자료 열람대장 등 역감시 대책 마련, 컴퓨터기술에 기반한 기술적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투자, 도서관 근무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지침 마련, 협력업체와의 계약서에 개인정보보호 문구 명기, 개인정보 취급자 및 업체의 보안각서 징구(徵求) 등 이제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가 되었다.

관종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논쟁은 도서관이 더 이상 개인정보 보호에서 무풍지대가 될 수 없으며, 서비스 환경 발전과 이용자의 의식개선에 걸 맞는 개인정보 보호노력은 현장에서 이용자를 만나는 사서와 도서관 당국, 그리고 회원도서관을 대표하는 한국도서관협회 모두의 책임이며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

1. 김연수. 2001.『개인정보보호』. 서울: 사이버출판사.
2. 임규철. 개인정보보호법제. 푸른세상. 2004.
3. 한위수. 사생활 비밀의 보호 – 그 공격적 측면. [인권옹호 심포지엄 자료]. 법무부. 2003. 12. 8.
4. 김기성. 2004. 디지털도서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개선방향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업발표자료).
5. 김종은. 2004.『도서관과 인권 토론자료』. [인용일 2004. 10. 20].[<http://vr.kunsan.ac.kr/ofs/041015.htm>].
6. 김 준. 2005.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 실무자를 위한 설명과 이해.『도서관계』. 2005(7).
7. 서현수. 2005.『공공도서관 개인정보 보호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8. 이인호. 2003. 정보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토론회 자료집』.
9. 국립중앙도서관. 2005.『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인용일 2005. 07. 05].[<http://www.nl.go.kr/upload/pri/2.hwp>].
10. 이미경 등. 2005.『圖書館 및 讀書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 [인용일 2005. 08. 10.]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jsp?billid=030754>].
11. ALA. ALA criticizes House reauthorization of PATRIOT Act. [<http://www.ala.org/Template.cfm?Section=october2004ab&template=/ContentManagement/ContentDisplay.cfm&ContentID=99935>].
1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Guidelines for Developing a Library Privacy Policy". [cited 2005. 04. 25]. [<http://www.ala.org/ala/oif/if toolkits/toolkitsprivacy/guidelinesfordevelopingalibraryprivacypolicy/guidelinesprivacypolicy.htm>].